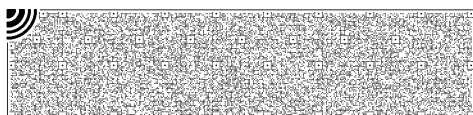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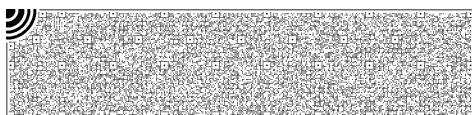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96호

의 안 명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혜택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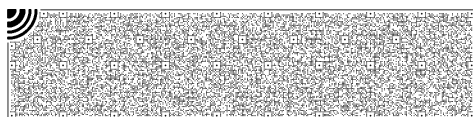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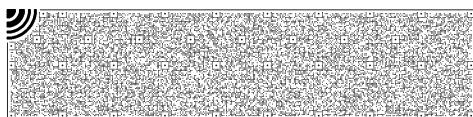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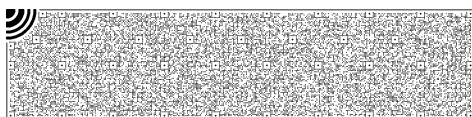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3. 23.

주 문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혜택 강화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377개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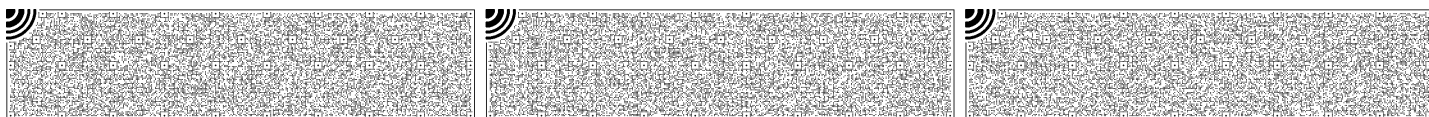
[별 지]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혜택 강화방안

202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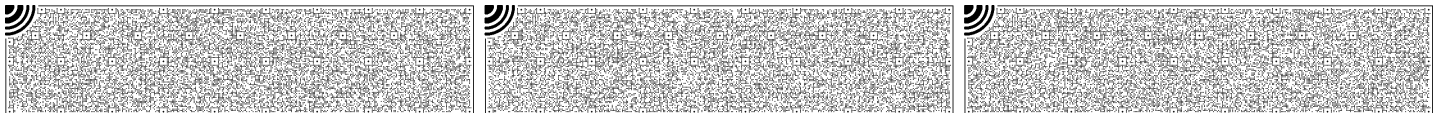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일반 현황	2
III. 현황 및 문제점	7
①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감면 근거 부재	7
② 다자녀가구 대상 주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할인 미비	9
③ 지역별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연계 부족	11
④ 다자녀가구 확인과정에서 불편 및 사각지대 발생	13
IV. 개선방안	15
①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감면 근거 마련	15
② 다자녀가구 대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할인 제공	16
③ 거주지 무관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부여	18
④ 다자녀가구 감면과정의 불편 및 사각지대 해소	19
V. 조치사항 및 기한	20



I.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3년도 0.721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24년도 0.748명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상태¹⁾**
 -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2명 이상)의 수와 비율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이에,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 중이며, 주차장 요금감면은 생활에서 체감도 높은 정부 혜택 중 하나
- 그러나,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여러 불편과 사각지대가 발생**
 - 일부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및 기차역 부설주차장**의 다자녀가구 대상 **할인제도 미비로** 다자녀가구의 혼란 및 불편 발생
 - ※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199개 지방정부 중 46개 기관은 다자녀가구 대상 감면혜택이 없으며, 일부 국립 문화시설도 관련 혜택이 부재한 상황
 -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지역과 상관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정부별 혜택이 연계되지 않는 상황
 - **[국민제안]**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음에도, 현재 존재하는 거주지역에 따른 칸막이를 개선할 필요('23.11월)
 - 할인대상인 다자녀가구 확인 과정에서 자동감면 시스템 미비,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으로 정산 지연 및 할인 누락 발생
- 이에, 다자녀가구의 공영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1)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합계출산율)」(25.12월)

II. 일반 현황

□ 다자녀가구의 정의 및 현황

- (정의) 일반적인 다자녀가구 기준을 정한 법률은 없으며,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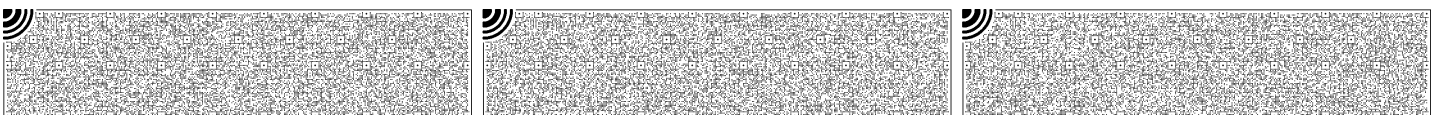
※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다자녀가구를 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로 규정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

- (중앙) 지원성격에 따라 각 법령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을 정하며, 통상 '미성년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규정

- ✓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규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 ✓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인 다자녀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다자녀 양육자를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2)
- ✓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의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및 교육부 고시)

- (지방정부) 출산 장려 조례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 조례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을 정하며, 통상 '양육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1명이 미성년자 또는 만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

- ✓ 서울특별시는 다자녀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정함(「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정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하고, 최연소 자녀 기준을 24세 이하로 정함(「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 포항시는 다자녀가정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으로 규정(「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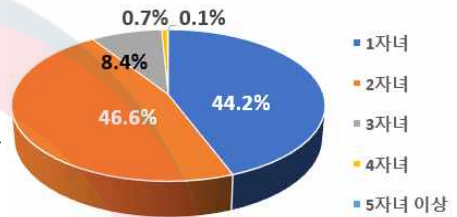
○ (현황) '24년 기준, 전국의 다자녀가구 수는 252만 2,706가구이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총 451만 7,125가구) 중 55.8%를 차지²⁾

※ 해당 현황은 다자녀가구를 '2자녀 이상인 가구'로 분류하여 작성

< 지역별 다자녀가구 현황 ('24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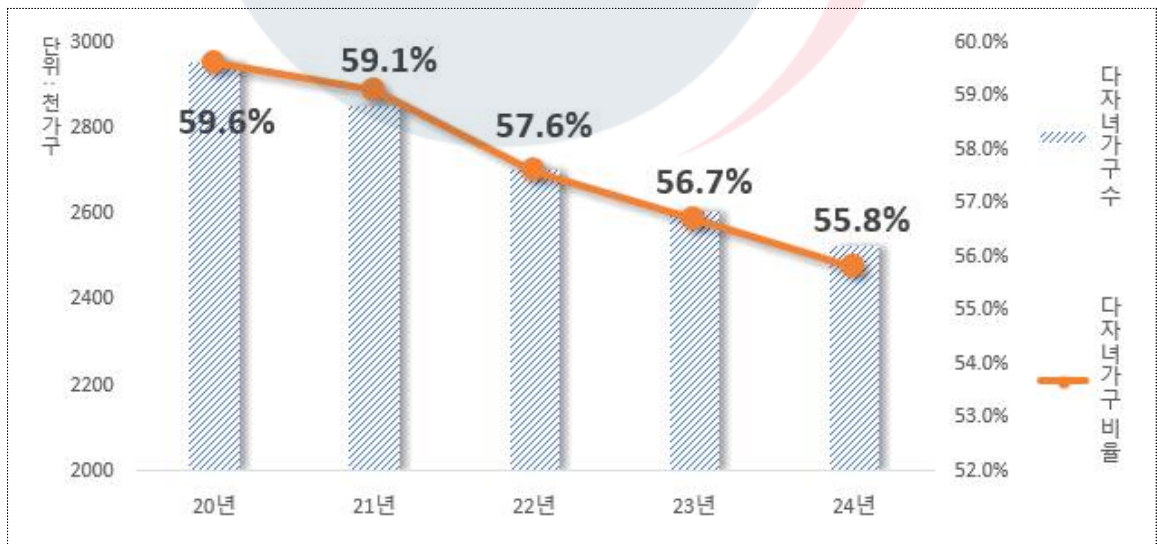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371,506	143,544	119,150	151,791	82,688	75,156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60,403	741,042	67,196	79,045	110,777	31,433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국
113,176	167,591	85,011	83,988	39,209	2,522,706

- '24년 기준, 미성년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46.6%), 1자녀(44.2%), 3자녀(8.4%), 4자녀(0.7%), 5자녀 이상(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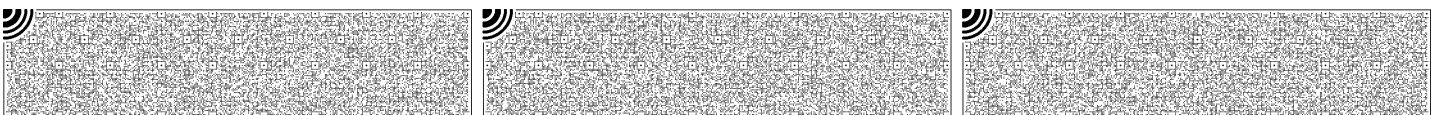


- 최근 5년('20년~'24년)간 '전체 다자녀가구 수' 및 '미성년자녀 가구 중 다자녀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

※ (다자녀가구 수) 2,951,071가구('20년) → 2,852,052가구('21년) → 2,701,389가구('22년) → 2,603,946가구('23년) → 2,522,706가구('24년)



2) 국가통계포털(KOSIS),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 통계」(25.7월)



□ **다자녀가구 대상 주요 우대정책³⁾**

- **(중앙)** 양육, 교육, 공공요금, 공공시설 이용, 세제,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가구 대상 전국단위 지원사업을 추진 중

< 전국단위 다자녀가구 주요 우대정책 현황 ('25년 기준) >

분야	지원사업	지원기준
양육	✓ 어린이집 우선 입소 1순위	2자녀 / 3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2자녀 (36개월 이하)
교육	✓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공공요금	✓ 전기요금 30% 할인(월 한도 최대 16,000원)	3자녀
	✓ 도시가스요금 할인(동절기 월 18,000원 등)	
	✓ 지역난방비 할인(월 4,000원)	
공공시설 이용	✓ 국립수목원, 주요 공능 입장료 무료	2자녀
	✓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및 우선예약	
	✓ 철도운임(KTX/SRT) 할인	
세제	✓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 자녀세액공제 추가 공제	
주거	✓ 주택특별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2자녀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지방정부)** 공동사업 외에도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혜택의 정도 및 범위는 지역별로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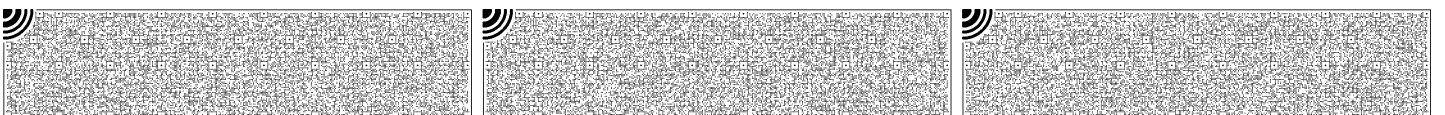
- 지역별로 △첫만남이용권* 및 돌봄지원 혜택, △공영주차장,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등 혜택 제공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둘째 출생아동 300만원)

- **광역 지방정부마다 다자녀가구 대상 혜택 부여와 자격 확인을 위한 우대카드(이하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발급 중**

※ 지역별로 연계된 시중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되며, 다자녀가구 혜택 제공을 위한 신분 확인용 등으로 사용됨

3)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각 지방정부 누리집 게시자료 등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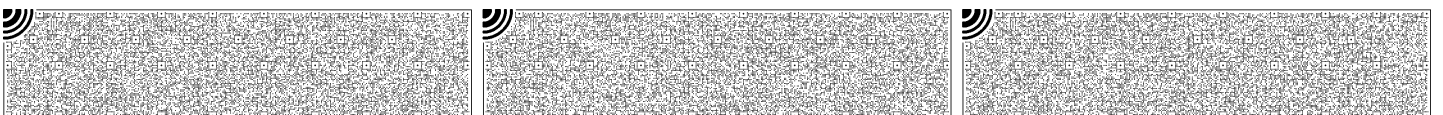
< 지방정부별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현황 ('25.12월 기준) >

지역	우대카드 명칭	우대카드 발급기준		
		신청인	자녀 수	나이 기준
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막내 18세 이하
부산	가족사랑카드	가정	2자녀	막내 19세 미만
대구	아이조아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8세 이하
인천	아이모아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8세 이하
광주	다자녀행복카드	가정	2자녀	막내 18세 이하
대전	꿈나무사랑카드	부 또는 모 (외국인 제외)	2자녀	막내 18세 이하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막내가 미성년자녀
세종	다자녀아이사랑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막내 15세 이하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8세 이하
강원	강원아이키움카드	가정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24세 이하
충북	다자녀행복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막내 18세 이하
충남	다자녀행복키움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8세 이하
경북	다복가정희망카드	가정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9세 미만
경남	경남아이다누리카드	가정	2자녀	막내 19세 미만
전북	아이조아카드	가정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8세 이하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정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8세 이하
제주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부 또는 모	2자녀 (태아 포함)	막내 19세 미만

□ 주차장 주요 현황 및 요금기준

-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며 (「주차장법」 제2조), 현재 193만 4,718개소에 3001만 6,342면이 설치되어 있음('24.12월 기준, 국토교통부)

※ 노상주차장 23,411개소, 노외주차장 26,856개소, 부설주차장 1,884,45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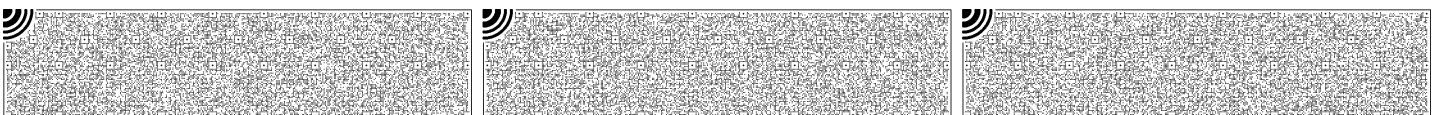
-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노외 및 노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요금, 할인대상은 기관별 조례에 규정**(「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 (요금기준) 급지*, 이용시간, 대기오염도, 문화·집회시설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조례에 공영주차장별 이용금액을 설정
 - * 대중교통시설 접근성, 자동차 통행량, 주차장 위치 등을 기준으로 1~3 급지로 구분하며, 1급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더 높게 책정됨
 - (할인대상) 긴급자동차, 경차 및 친환경차는 「주차장법」에 따른 할인대상이며, 통상 조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병역명문가, 모범납세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

<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요금 주요 감면대상4) >

감면대상	감면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20%

-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요금 및 할인 대상은 소재지 지방정부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별도 주차장 비용징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음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Ⅲ. 현황 및 문제점

1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감면 근거 부재

현황

-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통상 이용금액의 50%) 혜택 제공
 - ※ 지방정부별 주차장 조례의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를 포함

< (참고) 지방정부별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감면기준 >

지역	감면율	감면기준
서울특별시	50%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50% 감면
인천 계양구	50% (100%)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자 증명서류 제시자에 대해 50% 감면 ※ 계양구 주민등록자로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100%
울산광역시	60%	시 거주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비사업용) 중 다자녀 사랑카드 등재 또는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제시자에 대해 60% 감면
강원 철원군	100%	'다자녀가정'으로 다자녀 사랑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100% 감면
경기 군포시	혼합	2자녀 이상 가정 또는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사람에 대해 최초 2시간 면제 및 2시간 초과시간에 따른 비용은 50% 경감

- 관할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무료 운영 중인 37개*를 제외한 153개 지방정부에서 할인혜택 제공(국민권익위 실태조사⁵⁾, '25.12월)

*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9개 광역 지방정부(도 및 대전광역시) 및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2개 미만인 지방정부 28개

< 지방정부별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비율별 현황 >

감면			미감면
50% 감면	50% 초과 감면	기타	
132개 (3자녀 추가 감면 4개)	7개 (60% 5개, 100% 2개)	14개 (일정시간 무료 등)	46개

5) 243개 지방정부 대상 서면조사, 미제출기관 7개 제외

문제점

○ 대다수의 지방정부에서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나, 일부 지방정부(46개)*는 관련 혜택 미제공

* 광역자치단체 1개, 시 16개, 군 29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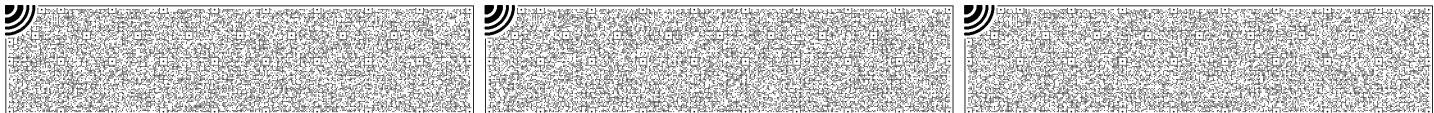
- 대부분 출산 장려 조례 등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별 지원사업의 근거인 주차장 조례에 **요금 감면규정 부재**

- ✓ ○○시는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를 정의하면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 주차장 조례」상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혜택 미제공
- ✓ ○○군은 「○○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정의하면서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나, 「○○군 주차장 조례」상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혜택 미제공

- 주차요금 감면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문화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할인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감면제도 미비로 이용과정의 불편 발생, 감면제도가 있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비교 등 민원 제기 요인으로 작용

- **[민원사례]** ○○시 공영주차장은 다자녀가구 할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쉬움이 듭. 지도앱에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을 검색하면 많은 지자체의 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시도 빠른 시일 내에 감면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23.1월)
- **[민원사례]** ○○군도 지방소멸 위기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군도 조속히 다자녀가구 할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국민신문고, '23.5월)
- **[민원사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구가 우대받아야 함에도 ○○시는 공영주차장 관련 혜택이 전혀 없음(국민신문고, '23.6월)



문제점

○ 현재 다자녀가구 할인혜택이 없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편 및 감면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상황

- **[민원사례]** 최근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다자녀가구 할인이 되고 있음. 현재 할인혜택이 없는 ○○산성 1주차장에도 혜택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국민신문고, '25.6월)
- **[민원사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문화시설인 ○○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25.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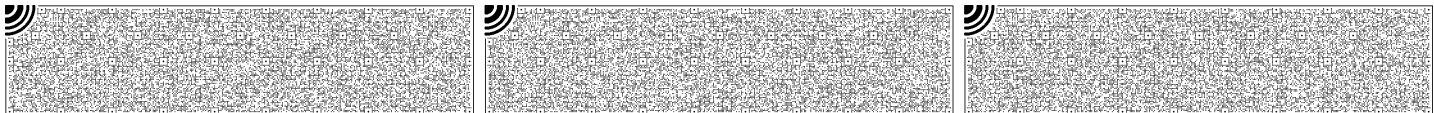
- 특히,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과 달리,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공영주차장에서는 요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 및 혼란 가중

- **[민원사례]** 다자녀카드를 보유 중이면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전당에서는 다자녀가구 혜택이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국민신문고, '24.1월)
- **[민원사례]** ○○○○ 노상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자녀가구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스러웠음. 할인이 불가능하다면 '공영'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안내해 주길 바람(국민신문고, '25.7월)

○ 기차역 부설주차장의 다자녀가구 할인혜택 미비로 인해, 혜택 신설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코레일네트웍스가 관리하는 기차역의 부설주차장은 철도 이용자, 친환경차 및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 부여

- **[민원사례]** 부산역 주변의 선상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도입을 요청함(국민신문고, '24.3월)
- **[민원사례]** 제한된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공항처럼 KTX역 부설주차장에서도 다자녀가구 할인을 제공할 것을 건의함(국민신문고, '24.3월)
- **[민원사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주변 역사 부설주차장과 달리 신길온천역 부설주차장은 다자녀가구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국민신문고, '24.9월)



3 지역별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연계 부족

현 황

- 공영주차장 정산소에서 현장 감면 시 이용자의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자녀가구 할인혜택을 적용
 - ※ 해당 지방정부가 소속된 광역 지방정부에서 발급한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사전등록하도록 안내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거주요건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 조례에 따르며,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
 -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25개(16.3%), '소속 광역 지방정부 거주자' 100개(65.4%), '해당 시군구 거주자' 28개(18.3%)로 다양하게 나타남(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5.12월)

< 지방정부별 공영주차장 다자녀가구 혜택 대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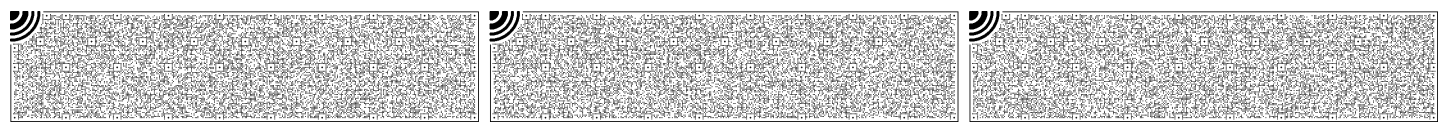
(감면혜택이 있는 153개 지방정부 기준)

지역 구분 없음	소속 광역 거주민	해당 시군구 거주민
25개	100개	28개

- 반면, 타 광역 지방정부의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인정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사례도 존재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제시하거나,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다자녀가구 할인혜택(이용금액의 50%)을 제공하고 있음
- ✓ 경기 과천시 2명 이상의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를 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의 차량 모두에게 할인혜택(이용금액의 50%)을 제공

※ 국립 문화·휴양시설, 공항 및 기차역(SRT 한정) 등의 부설주차장은 소재지 광역 지방정부에서 발급한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발급한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 제공



문제점

○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지역과 상관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정부별 **혜택 미연계로 민원 다수 발생**

- **[국민제안]**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음에도, 현재 존재하는 **거주지역에 따른 칸막이를 개선할 필요**(’23.11월)
- **[민원사례]** ○○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시로 출퇴근 및 업무수행 방문이 빈번함. 그러나 ○○시 소재 공영주차장은 시 거주 다자녀가구에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은 정부 차원의 다자녀가구 우대정책에 반하며, ○○도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국민신문고, ’25.11월)
- **[민원사례]** 가족휴가로 ○○시 소재 공원에 방문하였으나, ○○시 거주자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할인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국민신문고, ’24.3월)
- **[민원사례]** ○○시는 타 지역민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 거주 다자녀가구에겐도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국민신문고, ’24.7월)
- **[민원사례]**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할인대상 다자녀가구 기준에 주민등록 요건을 없애고, 다자녀가구가 맞다면 할인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해주길 건의함(국민신문고, ’24.12월)

○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광역단위로 발급하고 있음에도, **같은 광역 지방정부 내 다른 기초 지방정부 거주자라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존재**

- **[민원사례]** 경기도 시·군별로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의 대상과 감면금액이 각기 다름. 이에 경기도 다자녀가구 카드 소지자는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건의드림(국민신문고, ’22.9월)
- **[민원사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직장은 김제에, 마트 및 병원 등은 전주와 익산으로 가고 있음. 그런데 전북에서 발행하는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시는 다른 지역거주민 혜택이 없는 상태임. 이에 다자녀가구 혜택을 각 시·군이 아닌 도민 전체로 해주시길 부탁함(국민신문고, ’23.2월)
- **[민원사례]**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활권은 ○○시인 다자녀가정임. 현재 ○○시 공영주차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만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해주시길 건의함(국민신문고, ’25.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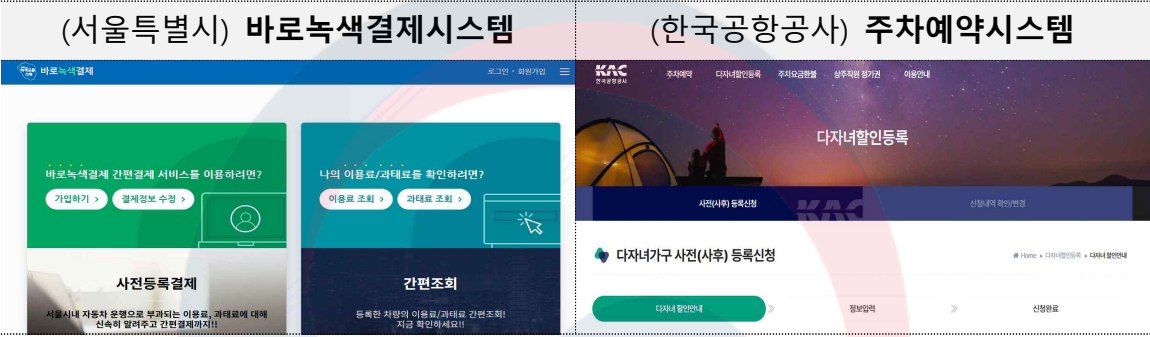


4 다자녀가구 확인과정에서 불편 및 사각지대 발생

현황

○ 다수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할인대상 자동 감면** 등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시스템**을 운영 중

※ 자동 감면을 통해 무인주차장 및 야간 이용 시 감면서비스 지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감면대상 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
< (참고) 기관별 다자녀가구 주차장 요금감면 사전등록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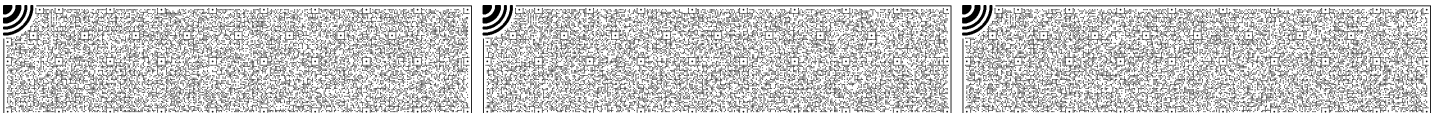


○ 시스템을 통한 자동 감면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등록하게 안내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사전등록시스템 운영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바로녹색결제시스템'(서울특별시)은 회원가입 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행안부)를 통해 다자녀가구 자격정보를 조회하여 혜택 부여
- 공항 부설주차장은 '주차예약시스템'(한국공항공사) 및 '정기권관리 시스템'(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용객이 사전에 다자녀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



문제점

- 자동 감면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현장 또는 콜센터를 통한 다자녀가구 확인과정에서 다수의 불편 민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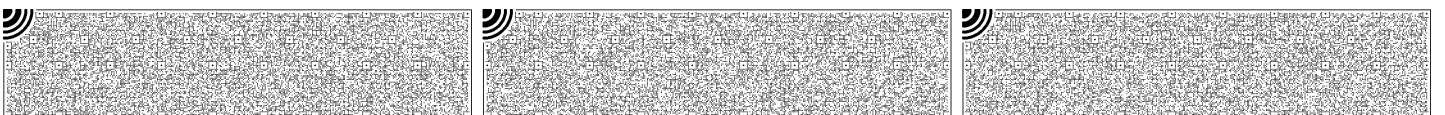
- **[민원사례]**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으려면 개폐기 앞에서 인터폰으로 공단에 연결하여 수작업으로 확인 후 감면받고 있음. 뒤에 차들이 밀려있고, 한 번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할인 없이 계산하고 있음. 이에 다른 지자체나 인천공항처럼 자동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길 건의함(국민신문고, '25.6월)
- **[민원사례]** 이미 구에서 발급한 다자녀가구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고 있고, 모바일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보여줬음에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실물카드를 보여달라며 불친절하게 대응함. 추후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길 바람(국민신문고, '25.2월)

- 특히 시간이 지나 다자녀가구 기준을 벗어났음에도, 이미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여 감면받는 사례 등 현장 감면방식의 한계 존재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자녀정보는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세대주(및 배우자) 외의 보호자는 다자녀가구 사전 감면신청에 어려움 존재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다자녀가구는 법원 가족관계등록 정보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 그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감면기관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 **[민원사례]** 세대주가 아닌 편부모가 다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다자녀가구 인증이 불가능함. 그에 따라 개별기관에 각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해 주시길 바람(국민신문고, '25.1월)
- **[민원사례]** 인천국제공항 다자녀가구 주차비 사전 감면신청을 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국민신문고, '24.1월)
- **[실태조사]** 일반적인 다자녀가구 외에도 사전등록시스템에 다자녀가구 차량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25.11월, 서울시설공단 건의사항)



IV. 개선방안

1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감면 근거 신설

○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정부]**

※ 다자녀가구 기준, 감면비율 및 할인금액, 다자녀가구 확인방식 등은 지방정부별 사정에 맞게 기준 마련(유료 공영주차장이 2개소 이상인 기관 한정)

< (예시)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감면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

현행	개선(안)
제00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 00. (생략) (신설)	제00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 00. (현행과 같음) 0. ○○도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차량

- **[참고사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서울특별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경기 남양주시) 등으로 규정
- **[참고사례]**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이용금액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60% (울산광역시), 100%(강원 철원군, 경북 구미시), 일정시간 무료(전북 군산시) 등 지역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 중

○ 근거 신설 이후 기관별 누리집, 공영주차장 요금표 등에 다자녀가구 할인제도가 시행되는 사실을 적극 홍보

➡ 기관별 주차장 조례 등에 반영



2 다자녀가구 대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할인 제공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휴양·체험시설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한 **할인혜택 제공**

[중앙행정기관 · 지방정부]

※ 일반공중 또는 시설 이용객에게 무료 개방하거나, 공공시설 특성상 다자녀 가구에 할인혜택 부여가 적절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은 제외

- 기관에서 직접 또는 직제상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비용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

※ (예시) 국립생물자원관(기후부), 국립미술관(문체부), 공·능관리소(유산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청), 직영 박물관 및 도서관(지방정부) 등

■ **[참고사례]** 다자녀가구(2자녀) 대상 전국 48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의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개선(산림청, '25.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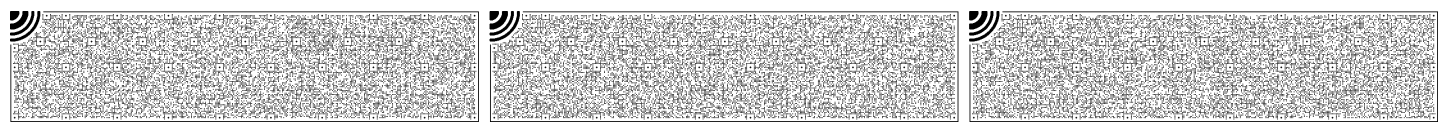
[별표 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주차료	- 경 형	1대*1일	1,500	1,50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주차료 면제
	- 중·소형	1대*1일	3,000	3,000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대 형	1대*1일	5,000	5,000	* (이 하 생 략)

■ **[참고사례]** 경기도 고양시는 공영주차장 외에도, 공공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비용 감면근거를 조례에 마련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말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7.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 **기관별 주차장 요금기준 및 조례 등에 반영**



-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공직유관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부설주차장 요금감면의 근거 마련

[공직유관단체]

※ 일반공중 또는 시설 이용객에게 무료 개방하거나, 공공시설 특성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할인혜택 부여가 적절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은 제외

- 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운영 및 요금 규정상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시설 소재지 지방정부 조례 등을 준용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해 할인 혜택 제공

■ **[참고사례]** 유료 부설주차장이 있는 공능관리소(4개소)는 「공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시적 할인규정은 없으나, 소재지 지방정부 (서울특별시 등)의 조례 및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활용하여 감면혜택 부여

➡ **기관 · 공공시설별 기준 등에 반영 또는 관련 조례 준용**

- 기차역 부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 근거 신설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네트웍스]**

- 현재 할인대상인 철도 이용객,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외에 다자녀가구 차량도 사규상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

■ **[참고사례]** (주)SR은 SRT 부설주차장 이용자 중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 대해 50%의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참고사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상 다자녀가구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등록시스템 운영과 건별 사후 감면요청을 받아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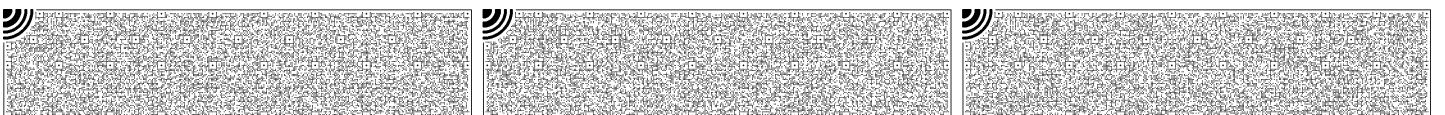
「주차장관리예규」(한국공항공사 사규)

제8조(주차료)

③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료의 50%를 감면한다.

2. 공사가 정한 다자녀가구 기준(2자녀이상, 막내나이 18세이하)을 충족하여 주차관리 홈페이지의 주차료 다자녀 감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차량

➡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 운영 규정」 개정**



3 거주지 무관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부여

- 동일 광역 지방정부 거주 다자녀가구 대상 동등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부여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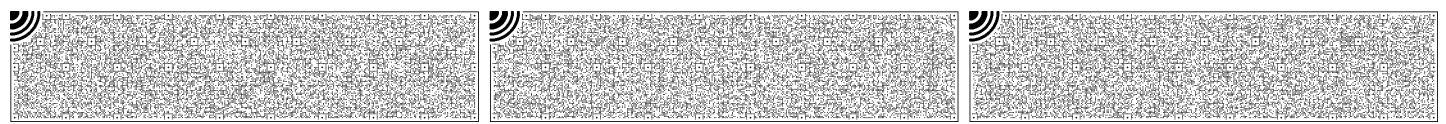
- **[참고사례]** 경기 양평군은 조례 개정('25.11월)을 통해 감면대상인 다자녀가구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세대'에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참고사례]** 서울특별시 및 소속 구는 감면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서울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로 통일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이라면 시내 공영주차장 어디에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책제안** 거주지와 무관한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이용 금액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칸막이 해소 **(지방정부)**

※ 요금감면 기준 등에 다자녀가구 할인의 지역 거주요건 삭제하거나, 타 지방정부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인정

- **[참고사례]** 경기 수원시는 감면대상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으로 정하여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혜택을 제공
- **[참고사례]** 경기 광명시는 감면대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의 차량'으로 정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면 할인을 제공
- **[참고사례]** 강원 강릉시는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차량'으로 정하여,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다자녀가구임을 입증하면 할인해 주고 있음
- **[참고사례]** 충남 서산시는 감면대상을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으로 정하고, 요금 정산 시 다자녀 우대카드 등을 보여주면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참고사례]** 제주특별자치도는 감면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로 정하고,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나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제공

▶▶ 기관별 주차장 조례 등에 반영



4 다자녀가구 감면과정의 불편 및 사각지대 해소

- **정책제안** 지방정부별로 다자녀가구 등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이 사전 등록하면 현장에서 자동 감면되는 시스템 마련 **(지방정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사전 신청 시 일정기간 동안 별도 확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시스템 마련
 - 사전 감면신청 시스템 구현을 통해 사용 건별로 정산소 등에서 직접 확인받아야 하는 다자녀가구의 불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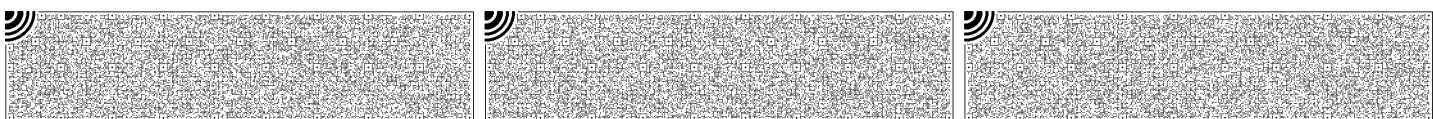
- **[참고사례]** 서울특별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통합주차관리플랫폼(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자녀가구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주차요금이 자동 감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스템 신규 구축(24.8월) 이후 자동 감면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지방정부별 주차비 자동감면시스템 마련

- **정책제안** 다자녀가구 대상 요금감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원 가족관계등록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등본 기준 정보만으로는 다자녀가구로 확인되지 않는 실질적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참고사례]** 「국민연금법」 제123조의2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참고사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는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개정



V.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377개),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네트웍스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부처	조치기한
1]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감면 근거 마련 ○ 지방정부별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의 근거 마련 ➡ 기관별 주차장 조례 등에 반영	지방정부	26.12월
2] 다자녀가구 대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할인 제공 ○ 기관에서 직접 또는 직제상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 ➡ 기관별 주차장 요금기준 및 조례 등에 반영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26.12월
○ 공직유관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대상 부설주차장 요금감면 근거 마련 ➡ 기관·공공시설별 기준에 반영 또는 관련 조례 준용	공직유관단체 (붙임2 참고)	26.12월
○ 기차역 부설 유료주차장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 ➡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 운영 규정」 개정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27.6월
3] 거주지 무관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부여 ○ 동일 광역 지방정부 거주 다자녀가구에 동등한 공영주차장 감면혜택 부여 ○ [정책제안] 거주지와 무관한 전국 단위의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비용의 감면근거 마련 ➡ 기관별 주차장 조례 등에 반영	지방정부	26.12월
4] 다자녀가구 감면과정의 불편 및 사각지대 해소 ○ [정책제안] 지방정부별 다자녀가구 대상 사전 등록 시 주차비가 자동 감면되는 시스템 마련 ➡ 지방정부별 주차비 자동감면시스템 마련	지방정부	-
○ [정책제안] 법원 가족관계등록 정보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개정	보건복지부	-



붙임1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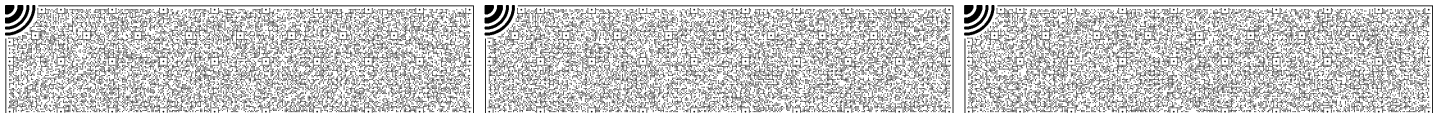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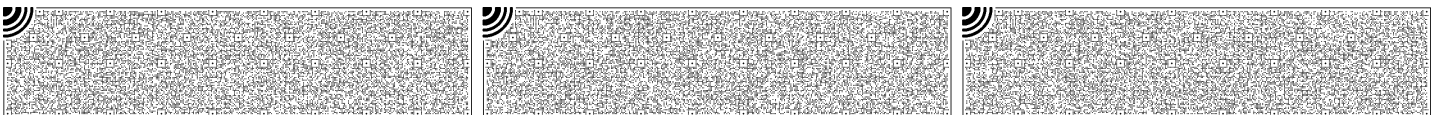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붙임2 권고 대상 공직유관단체 목록 (과제 3-②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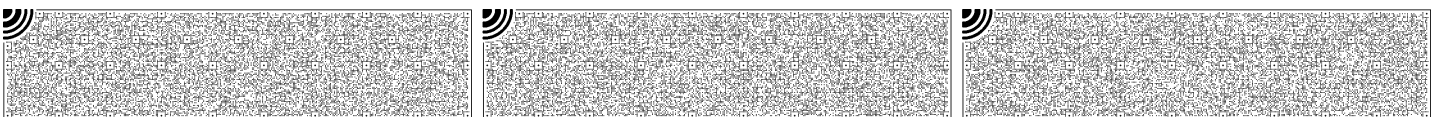
순번	대상기관
1	(주)강원랜드
2	한국마사회
3	가평군시설관리공단
4	강남구도시관리공단
5	강릉관광개발공사
6	강북구도시관리공단
7	강서구시설관리공단
8	강원개발공사
9	강화군시설관리공단
1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1	경기관광공사
12	경남개발공사
13	경상북도개발공사
1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5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6	고양도시관리공사
17	과천도시공사
18	광명도시공사
19	광주광역시관광공사
20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2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2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23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24	광주도시관리공사
25	광주환경공단
26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8	구리도시공사
29	구미도시공사
30	군포도시공사
31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2	김천시시설관리공단
33	김포도시관리공사
3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5	남양주도시공사
36	단양관광공사
37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순번	대상기관
190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91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192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193	(재)청송문화관광재단
194	(재)통영국제음악재단
195	(재)통영문화재단
196	(재)포항문화재단
197	(재)행복북구문화재단
198	(재)화성시환경재단
199	강남문화재단
200	강북문화재단
201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2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203	계룡시문화관광재단
204	고래문화재단
205	고양문화재단
206	구로문화재단
207	국가유산진흥원
208	국립공원공단
209	국립광주과학관
21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11	국립대구과학관
212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13	국립부산과학관
214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15	국립생태원
2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217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18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19	국립한국문학관
220	국립항공박물관
221	국립해양박물관
22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2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24	군포문화재단
225	대한장애인체육회
226	대한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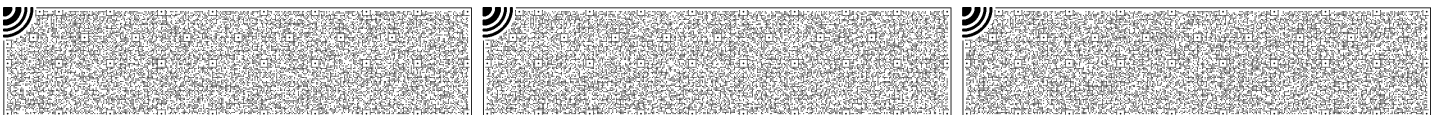
순번	대상기관
38	당진도시공사
3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40	대구도시개발공사
41	대전관광공사
4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43	대전도시공사
44	도봉구시설관리공단
4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46	동두천시설관리공단
47	동작구시설관리공단
48	동해시시설관리공단
49	마포구시설관리공단
50	문경관광공사
51	밀양시시설관리공단
5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53	부산관광공사
54	부산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55	부산도시공사
56	부산시설공단
57	부산환경공단
58	부여군시설관리공단
59	부천도시공사
60	사천시시설관리공단
61	서산시시설관리공단
62	서울시설공단
6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64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65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66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67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6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69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70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71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72	성남도시개발공사
73	성북구도시관리공단
74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75	속초시시설관리공단
7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77	수원도시공사

순번	대상기관
227	도봉문화재단
228	독립기념관
22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31	부천아트센터
232	서울관광재단
233	서울문화재단
23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35	성동문화재단
236	수성문화재단
237	예술의전당
238	용인문화재단
239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240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241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242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
243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244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245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246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247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248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249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250	재단법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51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252	재단법인 수원도시재단
253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254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255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256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257	재단법인 종량문화재단
258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259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260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261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
262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263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
264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265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
266	재단법인2018평창기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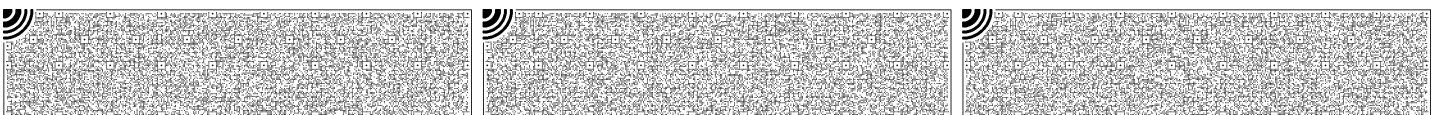
순번	대상기관
78	시흥도시공사
79	아산시시설관리공단
8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81	안산도시공사
82	안성시시설관리공단
83	안양도시공사
84	양산시시설관리공단
85	양주도시공사
86	양천구시설관리공단
87	양평공사
88	여수시도시관리공단
89	여주도시공사
90	연천군시설관리공단
91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92	영월군시설관리공단
93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94	오산도시공사
95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96	완주군시설관리공단
97	용산구시설관리공단
98	용인도시공사
99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00	울산광역시도도공사
101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102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103	울산시설공단
104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05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106	의왕도시공사
107	의정부도시공사
108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09	익산시도시관리공단
110	인천관광공사
111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1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13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114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15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16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117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순번	대상기관
267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268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269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270	재단법인경산문화관광재단
271	재단법인고령문화관광재단
272	재단법인고성문화재단
273	재단법인광명문화재단
274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7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276	재단법인구미문화재단
277	재단법인국립극단
278	재단법인국립문화공간재단
279	재단법인군산문화관광재단
280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281	재단법인금천문화재단
282	재단법인김포문화재단
283	재단법인나주문화재단
284	재단법인남동문화재단
285	재단법인남양주문화재단
286	재단법인논산문화관광재단
287	재단법인담양군문화재단
288	재단법인당진문화재단
289	재단법인대구문화예술진흥원
290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291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92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293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294	재단법인동해문화관광재단
295	재단법인부산남구문화재단
296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297	재단법인부산진문화재단
298	재단법인부안군문화재단
299	재단법인삼척관광문화재단
300	재단법인생거진천문화재단
301	재단법인서산문화재단
302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303	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
304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305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306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순번	대상기관
118	인천도시공사
119	인천시설공단
120	인천환경공단
121	전남개발공사
122	전북개발공사
123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2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25	제주관광공사
1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7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28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29	진주시시설관리공단
130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31	창원레포츠파크
132	창원시설공단
133	천안도시공사
134	청도공영사업공사
135	청주도시공사
136	춘천도시공사
137	충북개발공사
138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39	충청남도개발공사
140	태백시시설관리공단
141	통영관광개발공사
142	파주도시관광공사
143	평창군시설관리공단
144	평택도시공사
145	포천도시공사
146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47	하남도시공사
148	함안지방공사
149	합천군시설관리공단
150	화성도시공사
151	(재)강동문화재단
152	(재)강릉문화재단
153	(재)경남로봇랜드재단
154	(재)경북문화재단
155	(재)경상남도관광재단
156	(재)경상남도환경재단
157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순번	대상기관
307	재단법인송파문화재단
308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309	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
310	재단법인양산문화재단
311	재단법인양양문화재단
312	재단법인양천문화재단
313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314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315	재단법인영동군 문화관광재단
316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317	재단법인영암문화관광재단
318	재단법인영월문화관광재단
319	재단법인예천문화관광재단
320	재단법인완주문화재단
321	재단법인은평문화재단
322	재단법인의정부문화재단
323	재단법인이천문화재단
324	재단법인익산문화관광재단
325	재단법인인제군문화재단
326	재단법인인천중구문화재단
327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328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329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330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331	재단법인제천문화재단
332	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
333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334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335	재단법인천안문화재단
336	재단법인철원문화재단
337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338	재단법인칠곡문화관광재단
339	재단법인태백시문화재단
340	재단법인파주문화재단
341	재단법인평창관광문화재단
342	재단법인포천문화관광재단
343	재단법인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344	재단법인하남문화재단
345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346	재단법인해남문화관광재단



순번	대상기관
158	(재)경주문화재단
15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160	(재)고양국제 박람회재단
161	(재)관악문화재단
162	(재)광진문화재단
163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164	(재)국립정동극장
165	(재)군위문화관광재단
166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167	(재)노원문화재단
168	(재)달서문화재단
169	(재)달성문화재단
170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171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172	(재)마포문화재단
173	(재)목포문화재단
174	(재)부산문화재단
175	(재)부천문화재단
176	(재)사천문화재단
177	(재)아산문화재단
178	(재)안산문화재단
179	(재)안산환경재단
180	(재)안양문화예술재단
181	(재)양구문화재단
182	(재)영주문화관광재단
183	(재)영화의전당
184	(재)오산문화재단
185	(재)원주문화재단
186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187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188	(재)인천문화재단
189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순번	대상기관
347	재단법인흥주문화관광재단
348	재단법인흥천문화재단
349	재단법인화성시문화관광재단
350	재단법인화순군문화관광재단
351	전쟁기념사업회
352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53	제주4.3평화재단
354	태권도진흥재단
355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3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5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5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59	한국영상자료원
360	한국잡월드
361	한국환경보전원
362	(재)5.18기념재단
363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64	(재)진주문화예술재단
365	(주)백스코
366	(주)엑스코
367	재단법인고성문화관광재단
368	재단법인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369	재단법인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370	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
371	주식회사 킨텍스
372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373	88관광개발(주)
374	코레일관광개발(주)
375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376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377	행정중심복합도시국립박물관단지통합 운영지원센터



참고1 **관계기관 주요 건의사항**

※ 실태조사 및 기관협의 시 관계기관 건의사항

□ **다자녀가구 기준 통일 및 명확화**

- ✓ 거주지와 무관한 일관되고 동등한 다자녀가구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필요
- ✓ 현재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는 자녀 수와 연령(만13세~18세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함. 이렇게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국 단위 시행은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과 현장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다자녀 기준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

□ **법률 등 상위법령상 근거 마련**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규정과 유사한 상위법령 규정이 선행될 필요
- ✓ 전국단위의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다자녀가구 정보 공동이용 기반 구축**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지방정부별 주차비 자동감면시스템 마련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경차나 장애인차량처럼 다자녀 차량임을 확인할 데이터 송신시스템의 사전 구축이 필요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처럼 다자녀가구 자동차 정보도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국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선을 건의함

□ **기타 건의사항**

- ✓ 전국 또는 광역 지방정부로 감면범위 확대 시 지방재정 보전·지원 대책이 수반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자녀가구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다자녀가구 정보 공유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
- ✓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인 증빙 자료의 통일 또는 규격화 필요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3월 23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최 진 영

위원 권 석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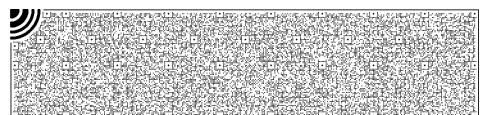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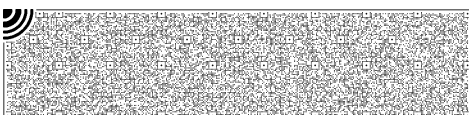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홍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울

위원 신 상 욱



정본입니다.

2026. 3. 23.

국 민 권 의 위 원

